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

허가(신고)번호	허가(신고)일자					
건축주						
대지위치						
지번						
※ “지번”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접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접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						
동별 개요	건축면적			연면적 합계		
	m ²	m ²	m ²	동별	구조	용도
종전 존치기간	연장 존치기간					

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「건축법 시행령」
제15조의2 제2항

-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,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